

#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

제정 1982. 8. 01  
개정 1992. 7. 28  
개정 2013. 5. 07  
개정 2014. 4. 29  
개정 2015. 1. 07  
개정 2018. 3. 30  
전부개정 2019. 2. 1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, 교양교육과정위원회,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, 학과·학부(전공)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구성)** ①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교무처장, 교무부처장, 교양융합대학장, 교무과장, 학사지원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 등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- ②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(교양융합대학은 제외)는 각 단과대학의 학장과 소속 학과(부)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단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며,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.
- ③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교양융합대학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두는 교양융합대학운영위원회로 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유고 시 의장은 호선한다.

**제3조(기능)**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
  - 가. 대학의 교육목표, 인재상 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 - 나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다.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
  - 라.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교양교육과정위원회
  - 가.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그 밖에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3.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
  - 가. 단과대학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에 관한 사항
  - 나. 각 학과·부(전공)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다.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학과·학부(전공) 교육과정위원회

가. 학과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에 관한 사항

나.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보고)**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심의결과는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,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6조(교육과정 분석 및 환류 등)**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과 교육과정컨설팅단 및 학생컨설팅단,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

② 연구위원과 교육과정컨설팅단 및 학생컨설팅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연구위원과 교육과정컨설팅단은 매년도 사회 여건 변화와 학생 요구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보고서를 제출한다.

④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요구조사 및 분석,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, 성과평가, 교육과정 개선 등을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실시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부 칙<2019. 2. 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